

사천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8. 05



사 천 시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사천시는 항공 산업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천시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중심으로 중소 항공업체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심 항공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천시는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음.
- '17. 12.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가 항공 MRO전문업체 선정됨에 따라 기 입지한 KAI 본사, 2공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용당리 일원에 시급한 공업용지 부지난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2 계획의 내용

가. 계획의 추진근거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근거

- 본 「사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또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개발기본계획	가. 도시의 개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표 1.2-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p>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p> <p>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p> <p>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미만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p> <p>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p>
--

나. 추진 경위 및 계획

1) 추진현황

- '14. 12. 23 : 항공정비사업(MRO) MOU 체결 [경상남도, 사천시, KAI]
- '17. 12. 19 : 항공 MRO사업자 선정(국토부)
- '17. 12. 21 : 201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경남 고시 제2017-521호)
- '18. 01. 19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18. 02. 06 : 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접수

2) 향후일정

- '18. 02. : 보상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18. 03. :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8. 03. : 감정평가 및 보상통지
- '18. 06. :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 '18. 10. :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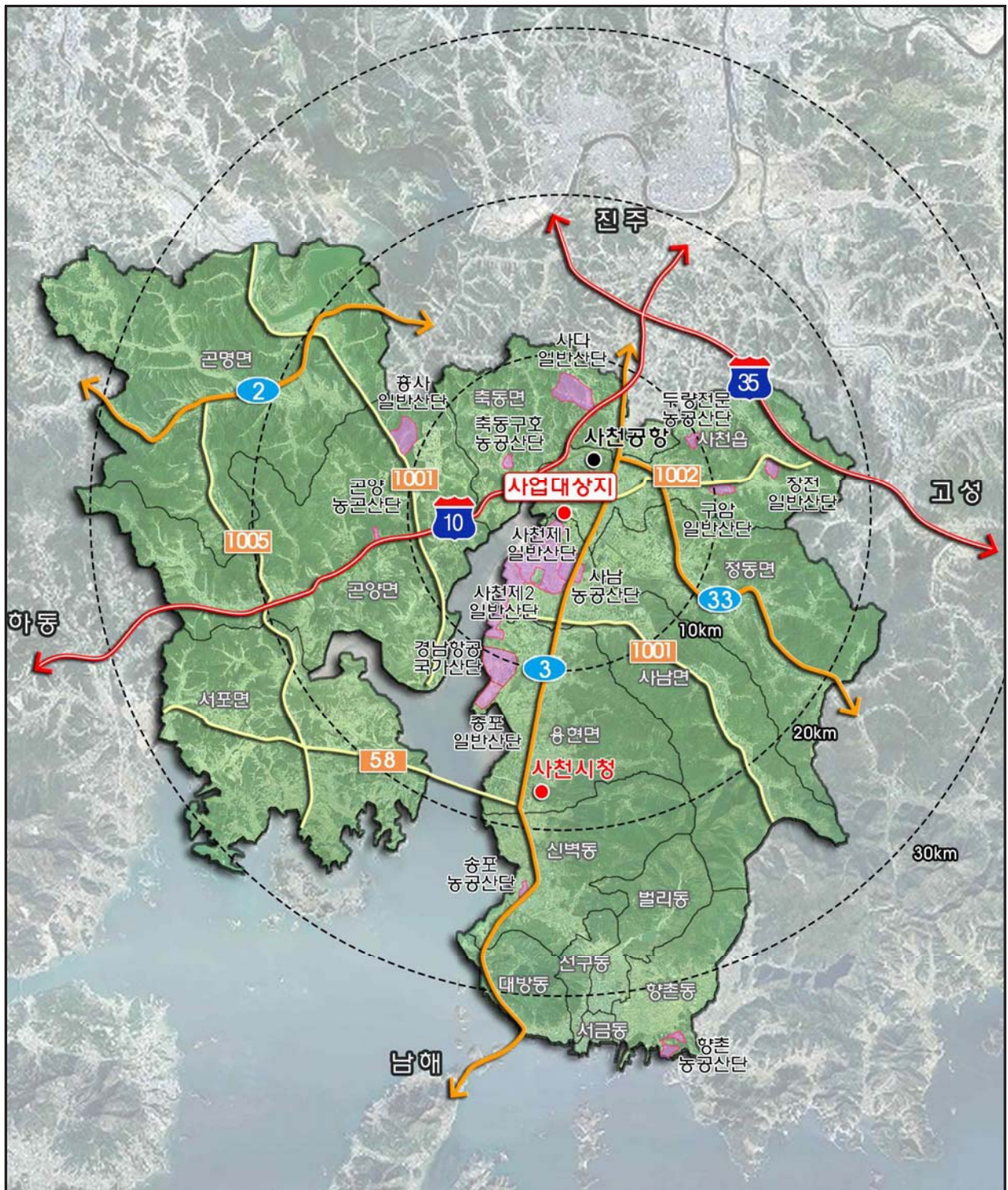
다. 계획의 개요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그림 1.2-1> 참조)
- 사업면적 : 145,263㎡

2)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2018~2020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그림 1.2-1> 위치도

3)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 승인권자 : 사천시장

4) 주요 유치업종

<표 1.2-3>

주요 유치업종

대분류	중분류	비고
C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자료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5) 토지이용계획

- 실수요자인 KAI 단독으로 사용하는 산업단지로 기존 KAI 2공장과 접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생산공간으로 계획하며, 전체 산업단지 중 산업시설용지는 73.5%인 106,767㎡로 계획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26.5%인 38,496㎡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
- 진입도로는 대상지와 주변 도시계획현황을 반영하여 중로 1-46호선(B=20m)과 연계하여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단지내 도로폭원을 20m로 계획하여 향후 산업단지 확장시 산업단지내 중심도로가 될 수 있도록 계획

<표 1.2-4>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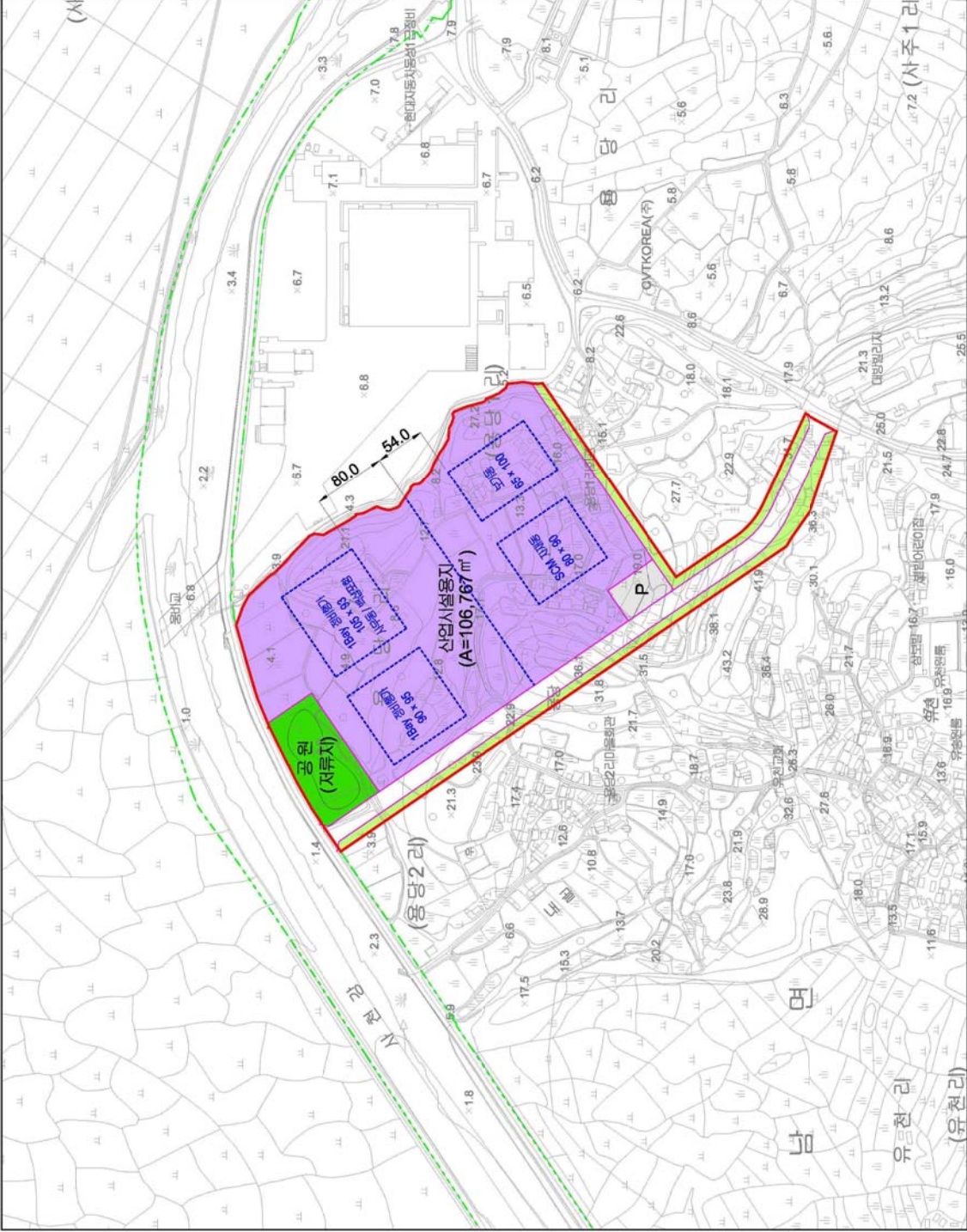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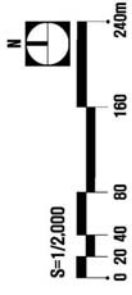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45,263	100.0		
산업시설	106,767	73.5		
공공시설	소계	38,496	26.5	
	도로	14,366	9.9	• 1개소
	주차장	2,400	1.6	• 1개소
	공원	8,680	6.0	• 저류지 중복결정
	녹지	13,050	9.0	• 완충녹지

용담항공MRR이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LEGEND

- 지구계
- 산업시설용지
- 도로
- 주차장
- 공원
- 녹지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1.2-2>

6) 기반시설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총괄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1	714	14,366	1	714	14,366	-	-	-	-	-	-
중로	1	714	14,366	1	714	14,366	-	-	-	-	-	-

○ 도로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m)				
신 설	중로	1	A	20	보조간선 도로	714	중로1-46 호선	용당리 407-3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증) 2,400	2,400		
신설	주1	주차장	노외주차장	용당리 301-1번지 일원	-	증) 2,400	2,400		

나) 공간시설

(1) 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 8,680	8,680		저류지 중복 결정
신설	공1	공원	소공원	용당리 152-12번지 일원	-	증) 8,680	8,680		

(2) 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 13,050	13,050		
신설	녹1	녹지	완충 녹지	용당리 292-2번지 일원	-	증) 8,014	8,014		
신설	녹2	녹지	완충 녹지	용당리 295번지 일원	-	증) 5,036	5,036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	증) 4,000	4,000		소공원 중복 결정
신설	유1	유수지	저류 시설	용당리 152-12번지 일원	-	증) 4,000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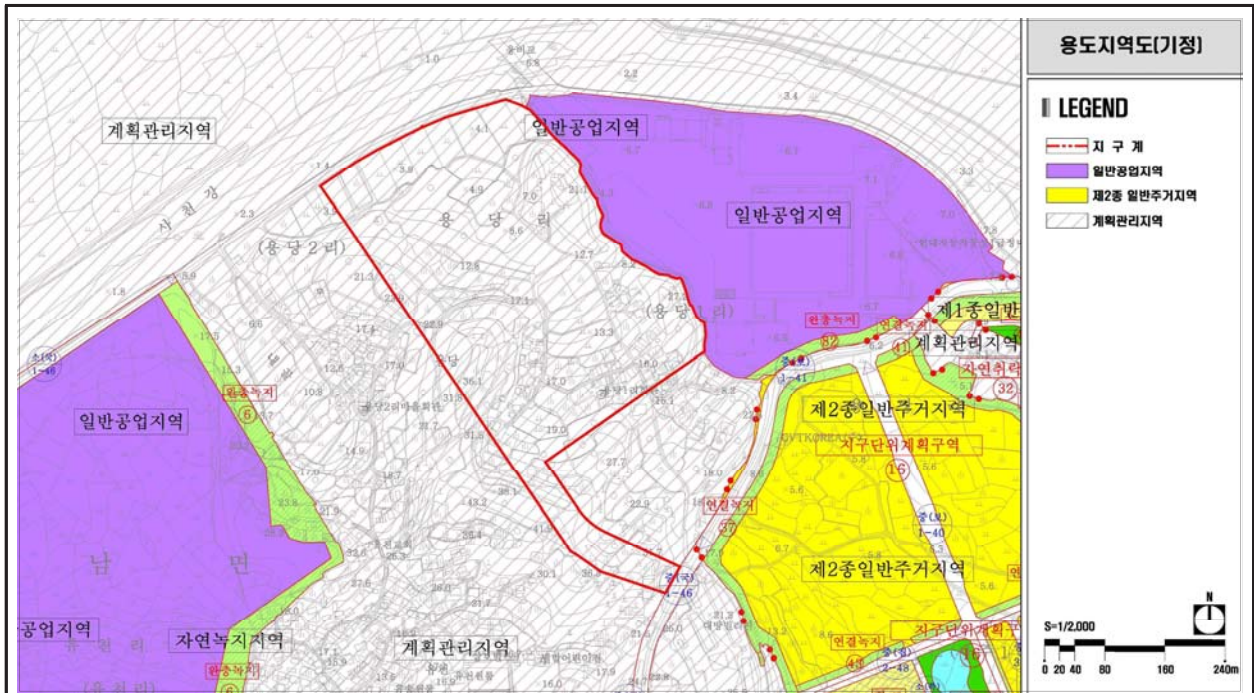
(7) 용도지역 계획

- 사업대상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지정시 각 시설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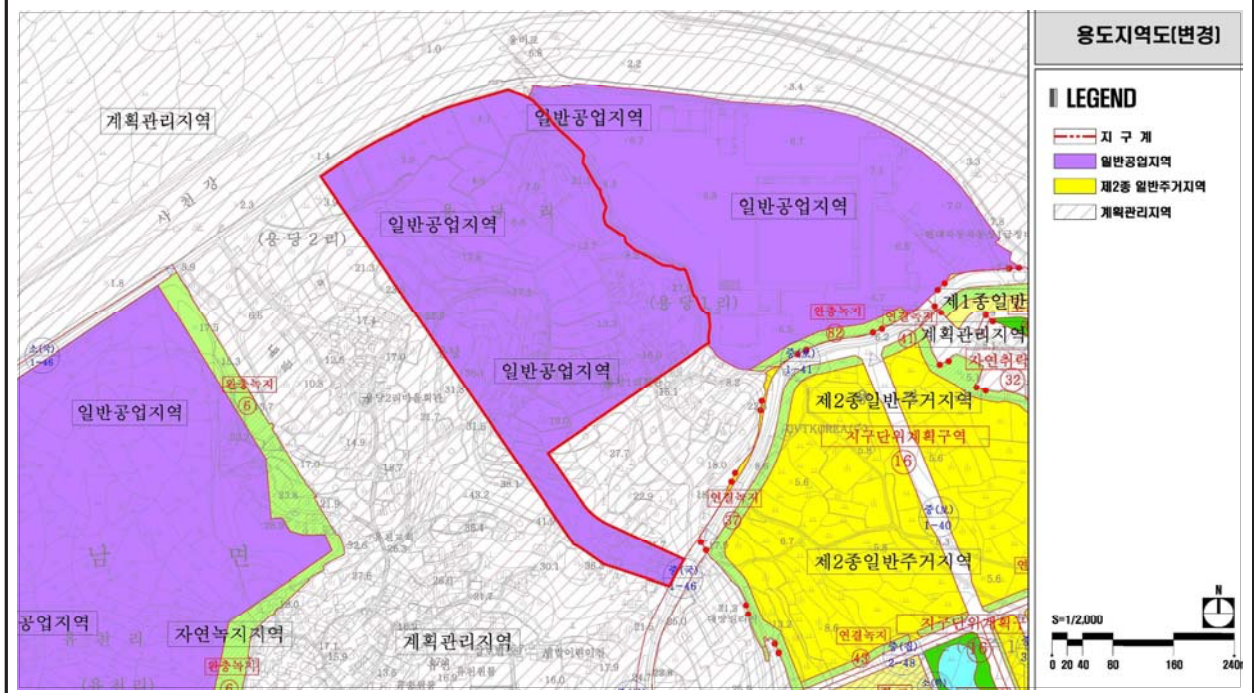
<표 1.2-5>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45,263	-	145,263	
공업지역	-	증) 145,263	145,263	
계획관리지역	145,263	감) 145,263	-	



용도지역도(기정)



용도지역도(변경)

<그림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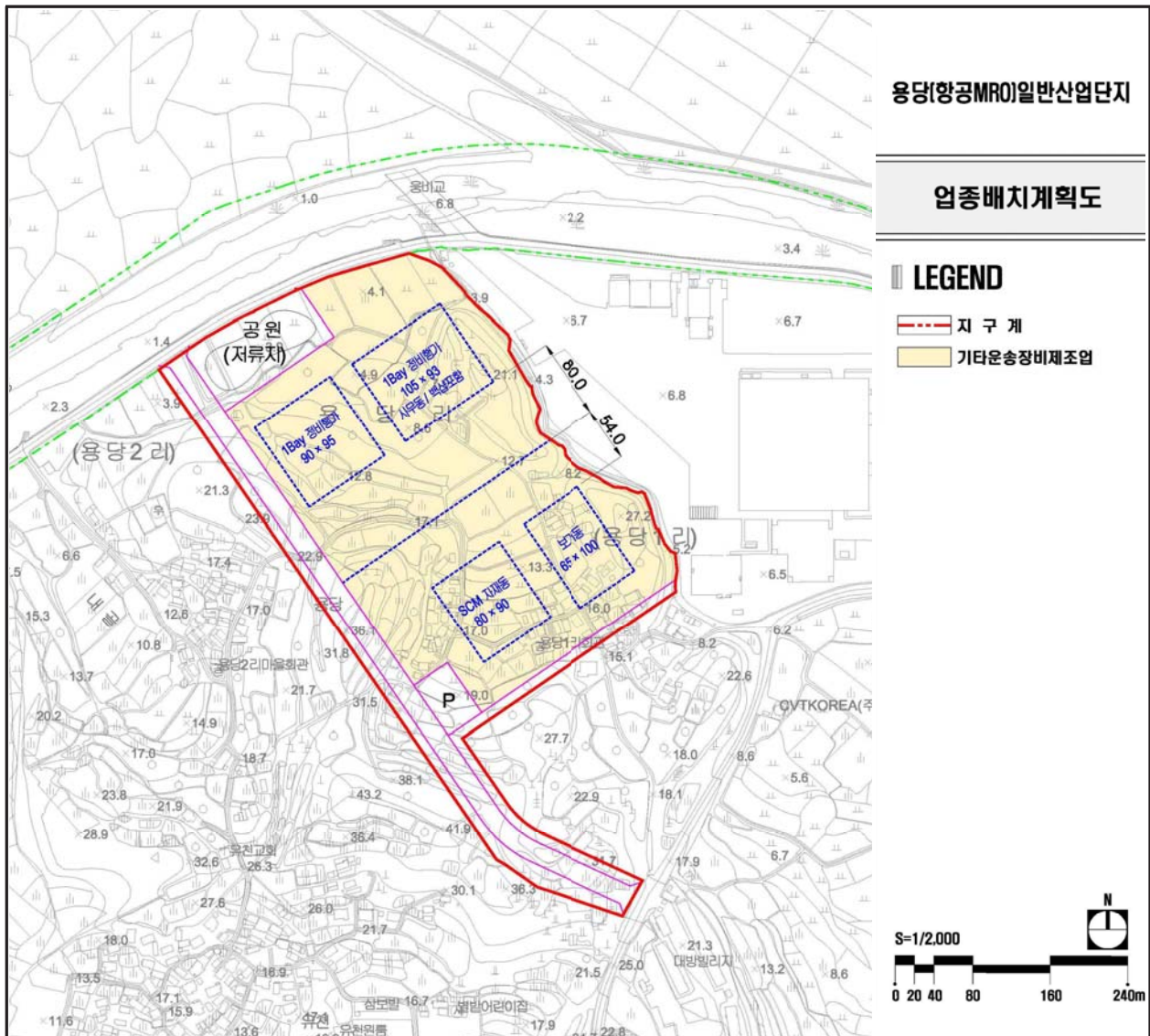
용도지역계획

(8) 업종배치계획

- 금회 산업단지는 '17. 12. 19일자로 항공MRO전문업체 선정됨에 항공MRO사업영위를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부지는 KAI에서 단독으로 입주하는 산업단지임.
- 항공 MRO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에 해당됨.

<표 1.2-6>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면 적 (㎡)	구성비 (%)	
산 업 시 설 용 지	106,767	100.0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106,767	100.0	



(9) 공급처리시설 계획

(가) 계획급수량 산정

- 본 사업대상지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업체에서 사용할 공업용수와 입주업체에서 소요되는 생활용수로 구분되며 그 수요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 사업대상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진사배수지(Q=7,500m³)에서 공급토록 계획

<표 1.2-7> 용수수요량 산정

구 분	용 수 량 (m ³ /일)	비 고
계	349.9	
공업용수	308.6	
생활용수	41.3	

주) 공업용수량은 산업시설내 생활용수량을 제외한 값임.

① 공업용수량 산정

<표 1.2-8> 산업용지 내 공업용수량 산정

유치업종	부지면적(m ²)	원단위(m ³ /천m ² ·일)	용수량(m ³ /일)
계	106,767	-	308.6
기타운송장비	106,767	2.89	308.6

주) 상수도 수요량 예측업무 편람(2014.3 환경부, 국토해양부) 적용

② 생활용수량 산정

- 계획급수인구는 산업시설내 입주업체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 구분하여 적용
- 상근인구의 급수량 원단위는 100 ℓ/인·일 적용(상수도 시설기준, 한국상수도 협회, p1,071, 건물종류별 단위급수량)
- 이용인구 급수량은 상근인구 급수량 원단위의 20%인 20 ℓ/인·일 적용
- 산업용지 상근인구수는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건설교통부) 적용

<표 1.2-9> 생활용수량 추정

구 분	계획인구			급수원단위 (ℓ/인·일)		일최대 계획급수량 (m³/일)		
	계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상근인구	이용인구
산업용지	610	364	246	100	20	41.3	36.4	4.9

(나) 오·폐수처리계획

- 폐수는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Q=5,700m³/일)으로, 생활오수는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Q=18,000m³/일)으로 유입하여 처리 할 계획임.

<표 1.2-10> 오·폐수발생량 산정

구 분	오·폐수 발생량(m³/일)	비 고
계	191.5	
산업폐수	146.0	
생활오수	28.1	
지 하 수	17.4	

<표 1.2-11> 일최대 폐수량 산정량

구 분	부지면적 (m²)	용수 원단위 (m³/천m²)	용수량 (m³/일)	폐수화율 (%)	폐수량 (m³/일)	지하수량 (m³/일)	일최대 폐수량 (m³/일)
산업시설용지	106,767	-	308.6		146.0	14.6	160.6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06,767	2.89	308.6	47.3	146.0	14.6	160.6

<표 1.2-12> 생활오수량 산정

구 분	계획인구 (인)		급수원단위 (ℓ/인·일)		유수율 (%)	오수전 환율(%)	일최대오수량 (m³/일)		
	상근	이용	상근	이용			오수	지하수	계
계	364	246					28.1	2.8	30.9
산업시설	364	246	100	20	80	85	28.1	2.8	30.9

- 주) 1. 유수율 :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14.7)』의 2020년 유수율 80% 적용
 2. 오수전환율 :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14.7)』의 오수전환율 85% 적용
 3. 지하수량 : 『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14.7)』에서 제시한 10% 적용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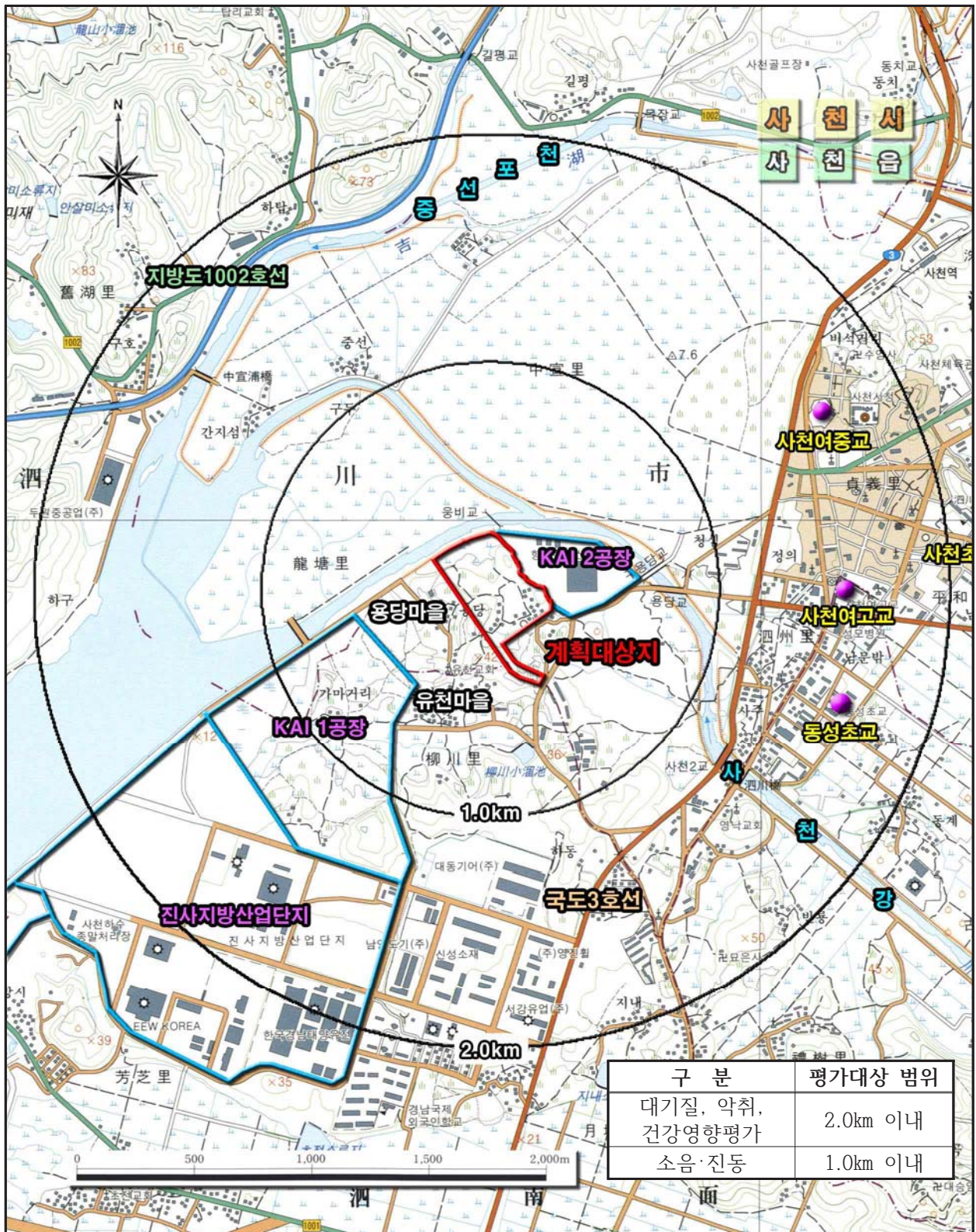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을 참조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및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평가범위	
			시간적	공간적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의 서식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범위 ○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포함 여부 및 훼손가능성 검토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공간 영향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인근지역 (반경 1km 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포함여부 검토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여부 ○ 부지정지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 	공사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 관련 보전용도지역에 대한 심대적 영향여부 ○ 생태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해안)에 대한 심대한 영향 여부 ○ 주요 조망점(근경, 중경, 원경)으로부터 심각한 자연경관 훼손 여부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1km 이내)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 ○ 공사시 토사유출 및 운영시 오·폐수 발생이 하천수질 및 해양수질 등에 영향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수계

<표 2.1-1>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계 속)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평가범위	
			시간적	공간적
생활 환경의 안정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 목표 설정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2km 이내)
	악취기준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운영시 발생악취가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배출허용기준 부합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2km 이내)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너지사용, 유 발교통량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1km 이내)
	토양환경 기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주변 토양에 미치는 영향예측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검토 환경기초시설의 공급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처리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및 사천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폐유, 임목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각종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며, 적정처리 여부 검토 	공사시 및 운영시	계획지구
	위생·공중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상지 의료 시설 현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환경취약계층으로의 영향여부 검토(건강영향평가) 	운영시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2km 이내)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포함 여부 검토 주변지역과 연계된 친환경적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지역산업과 조화여부 검토 	운영시	계획지구	



<그림 6.2-1> 계획지구 대상구역 설정도

2.2 환경영향 예측·분석 기법 및 관련 자료

- 본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예측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된 예측 및 분석기법, 관련 자료 등은 <표 2.2-1>과 같다.

<표 2.2-1> 환경영향평가예측·분석기법, 내용 및 관련 자료

구 분	세부평가항목	예측·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 자료	비 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 내용에 따른 녹지자 연도, 훼손수목, 서식환 경 등 동·식물상의 변화 정도를 예측	○ 현지조사 자료 ○ 계획 관련 자료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변화 및 사면 발생여 부 ○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 적 가치가 큰 지역이나 형상 등의 영향여부 검토	○ 계획 관련 자료 ○ 문헌자료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각 방위 및 거리를 고려 하여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현황을 조사	○ 문헌자료 ○ Photoshop 등을 이용한 경관영향 예측	
	수환경의 보전	○ 계획의 시행에 따른 토사 유출량 및 홍수량의 변화 가 예상되는 범위 ○ 공사시 부지정지로 인하 여 토사유입 및 공사인 부에 의한 오수유입이 예 상되는 계획대상지 주변 수계 ○ 운영시 인구에 의한 오수 발생 및 비점오염원 유입 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 계획 관련 자료 ○ 환경부 고시, 하수 도기본계획 등 문 헌 자료	
생활환경의 안전성	대기환경 기준과의 부합성	○ 계획대상지 주변 대기질 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사시 건설장비, 토공작 업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 물질 확산 예측	○ 현장 측정자료 ○ 건설표준품셈 ○ 계획 관련 자료	

<표 2.2-1> 환경영향평가예측·분석기법, 내용 및 관련 자료(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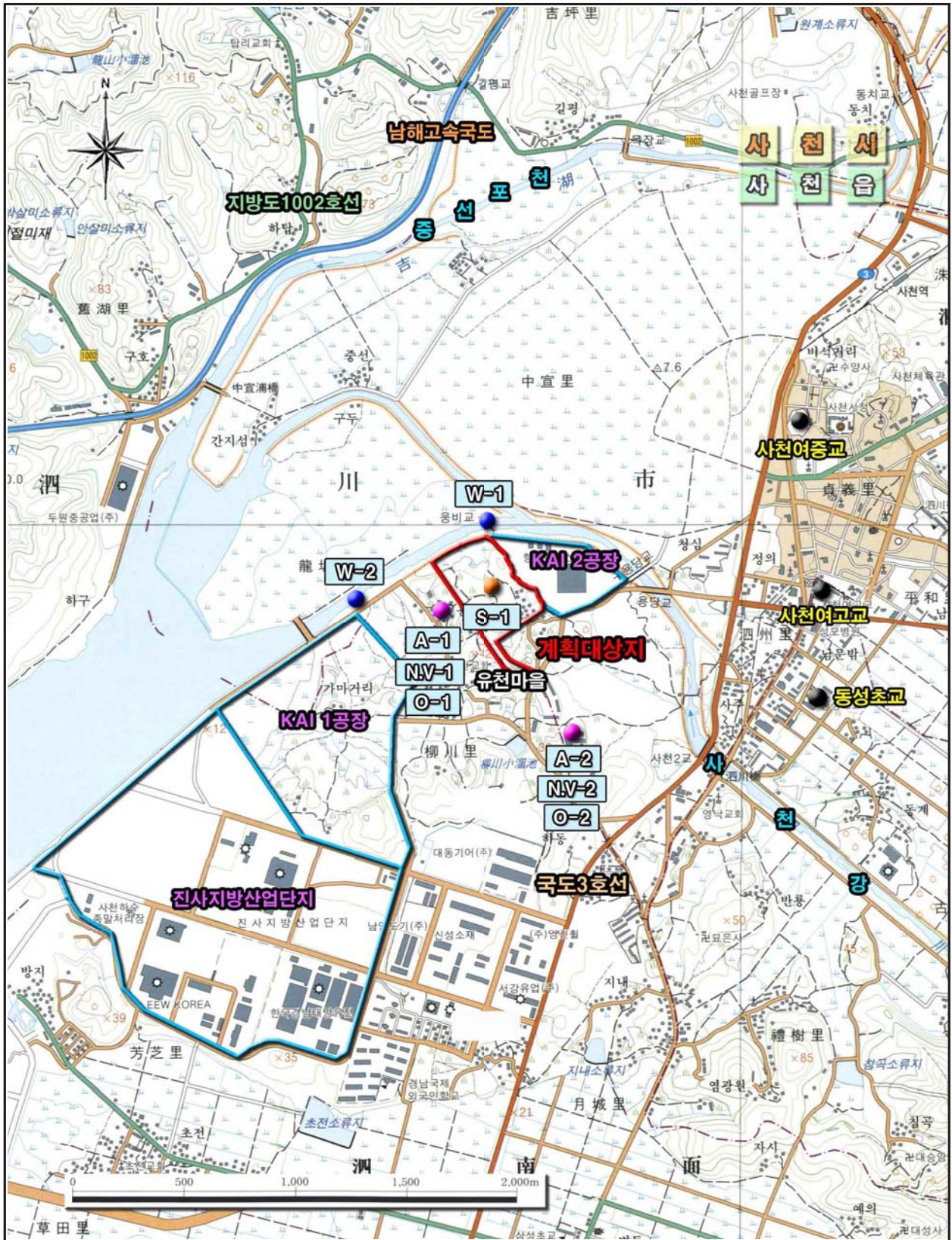
구 분	세부평가항목	예측·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 자료	비 고
생활 환경의 안전성	악취기준과의 부합성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업시행시 발생 하는 악취 예측 및 분석	◦ 악취공정시험법 ◦ 기존 및 유사사례 조사	
	온실가스	◦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온실가 스 예측 및 분석	◦ 건설공사 표준품셈 ◦ 국가온실가스 인벤 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 라인 등	
	소음·진동 기준과의 부합성	◦ 합성소음 산출식, 점음원 거리감쇠식을 이용하여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 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 향을 예측	◦ 현지조사 자료 ◦ 계획 관련 자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생활 오수, 폐기물 등의 처리 계획 적정성 검토 ◦ 환경기초시설의 연계처리 여부 등	◦ 현지조사 자료 ◦ 계획 관련 자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원단위, 문헌자료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 물, 임목폐기물, 건설폐 기물 등 발생량 예측 ◦ 운영시 원단위, 문헌자료 등을 이용하여 근무자 및 이용객에 의한 생활폐기 물 발생량 예측	◦ 문헌 및 현지조사 자료 ◦ 계획 관련 자료	
	위생·공중보건 (건강영향평가)	◦ 사천시의 위료시설,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등의 현 황 조사	◦ 통계연보(2016, 사 천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 용변화 분석	◦ 계획 관련 자료 ◦ 통계연보(2016, 사 천시)	

2.3 환경질 조사계획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수계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지표수질, 지하수질), 소음·진동, 토양, 악취) 조사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2.3-1> 환경질 조사항목

구 분	조사지점	조사횟수	조 사 항 목	조사방법
동·식물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반경 1.0km 이내, 수계포함)	5~6월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생물상, 육수생물상 분포 및 서식현황, 식생보전등급 등 ◦ 생태자연도(최근 자료) ◦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탐문조사 포함)
기 상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3개월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주변 기상청 AWS 자료(사남면사무소, 계획지구로부터 이격거리 : 2.7km)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 이용
대기질	2지점	2계절 (3일 연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화물(SO₂), 일산화탄소(현장측정), 질소산화물(NOx), 비산먼지(PM-10), 미세먼지(PM-2.5), 오존, 납, 벤젠(총 8개항목) 	현지조사 (3일 연속)
소음·진동	2지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도 및 진동도 	현지조사
악 취	1지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악취 	현지조사
토 양	1지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뮴(Cd), 구리(Cu), 납(Pb), 비소(As), 수은(Hg), 6가크롬(Cr⁺⁶), 아연(Zn), 니켈(Ni), 불소(F), 유기인, 페놀류, 유류(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현지조사
지표수질	2지점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수소이온농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존산소량), 대장균군수, T-P(총인), T-N(총질소) 	현지조사



<그림 6.3-1>

환경질 조사지점도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 대안의 종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2호, 2016. 01. 21)’ 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의 선정방법, 계획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제약 요인, 수용가능성, 실현가능성 등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설정함.
- 본 계획은 「용당(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대안의 선정방법에서 입지, 수요·공급 및 시기·순서와 관련한 실질적 대안은 현 단계에서는 없음.
- 따라서 계획 수립(Action)과 미수립(No Action)의 계획비교를 중점대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계획 시행시 공간배치, 도입시설,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수단·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하였음.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 류	대 안 선 정 방 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선 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3.1-2>

대안의 종류 선정 및 대안비교

구 분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 (Action)		대안 2	대안 1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																																													
	대안 1	대안 2																																																
토지이용 계획					<p>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대상지의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농경지가 65.1%(0㎡)로 대부분이며, 그 외 임야 15.7%(22,802㎡), 대지 11.5%(16,724㎡), 도로, 묘지, 구거, 대지, 제방, 하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면 적(㎡)</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총 면 적</td> <td>145,263</td> <td>100.0</td> </tr> <tr> <td>산업시설용지</td> <td>106,767</td> <td>73.5</td> </tr> <tr> <td>소 계</td> <td>38,496</td> <td>26.5</td> </tr> <tr> <td>도로</td> <td>14,366</td> <td>9.9</td> </tr> <tr> <td>주차장</td> <td>2,400</td> <td>1.6</td> </tr> <tr> <td>공원</td> <td>8,680</td> <td>6.0</td> </tr> <tr> <td>녹 지</td> <td>13,050</td> <td>9.0</td> </tr> </tbody> </tabl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 2에 비해 녹지율(9.0%) 높고, 산업용지율(73.5%) 낮음. 진입도로 계획으로 교통동선의 연계성 1안보다 좋음. </p>	구 분	면 적(㎡)	구성비(%)	총 면 적	145,263	100.0	산업시설용지	106,767	73.5	소 계	38,496	26.5	도로	14,366	9.9	주차장	2,400	1.6	공원	8,680	6.0	녹 지	13,050	9.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면 적(㎡)</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총 면 적</td> <td>148,365</td> <td>100.0</td> </tr> <tr> <td>산업시설용지</td> <td>117,758</td> <td>79.4</td> </tr> <tr> <td>소 계</td> <td>30,607</td> <td>20.6</td> </tr> <tr> <td>도로</td> <td>11,653</td> <td>7.9</td> </tr> <tr> <td>주차장</td> <td>2,400</td> <td>1.6</td> </tr> <tr> <td>공원</td> <td>8,688</td> <td>5.9</td> </tr> <tr> <td>녹 지</td> <td>7,866</td> <td>5.3</td> </tr> </tbody> </table>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1에 비해 녹지율(5.3%) 낮고, 산업용지 비율(79.4%) 높음. 공급가용지의 확보 </p>	구 분	면 적(㎡)	구성비(%)	총 면 적	148,365	100.0	산업시설용지	117,758	79.4	소 계	30,607	20.6	도로	11,653	7.9	주차장	2,400	1.6	공원	8,688	5.9	녹 지	7,866	5.3
구 분	면 적(㎡)	구성비(%)																																																
총 면 적	145,263	100.0																																																
산업시설용지	106,767	73.5																																																
소 계	38,496	26.5																																																
도로	14,366	9.9																																																
주차장	2,400	1.6																																																
공원	8,680	6.0																																																
녹 지	13,050	9.0																																																
구 분	면 적(㎡)	구성비(%)																																																
총 면 적	148,365	100.0																																																
산업시설용지	117,758	79.4																																																
소 계	30,607	20.6																																																
도로	11,653	7.9																																																
주차장	2,400	1.6																																																
공원	8,688	5.9																																																
녹 지	7,866	5.3																																																
특징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공원.녹지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공원.녹지의 확보 																																																
친환경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공원.녹지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공원.녹지의 확보 																																																
채 택 안	○																																																	

제 4 장 주민의견수렴 계획

4.1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가.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실시 내용을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기관(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나. 평가서 초안 공람

- 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본 사업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기관(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사천시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를 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1회 실시할 계획이며, 공청회는 주민들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계획임.

라.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반영여부를 사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 14일 이상 공람할 계획임.

제 5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5.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함.

5.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추진계획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주관행정기관 : 사천시
- 협의회 구성 : 계획수립기관 소속공무원,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인 내외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협의회 심의일시 : 2018. 04. 09~17
- 심의방법 : 서면심의

<표 5.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현황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분야	비 고
위원장	사천시	산단관리과장	김경호	단지계획	
위 원	사천시	문화관광과 문화재팀장	이중기	문화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장	신현범	환 경	
		녹지공원과 산림경영팀장	조명철	산 립	
		농축산과 농지관리팀장	박성민	농 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주기회	환 경	
	부산대학교	바이오환경에너지과 교수	이병인	도시환경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춘식	환경전문가	
	사천시 사천읍	용당1리마을 대표	김상문	주민대표	
관광진흥협의회	사천시협의회 회장	서원호	시민단체		

5.3 협의회 심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은 <표 5.3-1>과 같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위원주 기 회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시 대기질(악취 포함), 소음·진동, 수질, 동·식물상, 위생·공중보건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역 주변 인근에 정온시설(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지역을 소음·진동은 1.0 km까지 확대 - 소음·진동은 토사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으로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시 사업시행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최대한 확대·설정함. -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은 1.0 km까지 확대하고, 토사운반로, 공사차량 진·출입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대상지역으로 설정함.	반영
		○ 계획지구 반경 2km이내의 운영 또는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대기질, 악취, 건강영향 등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악취, 건강영향평가 등 영향예측 시 계획지구 반경 2km 이내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누적 평가를 실시하겠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도로 인접부지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거나 산업시설물을 최대한 이격배치, 공공시설 및 공원을 배치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도로 인접부지는 충분한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거나 산업시설물을 최대한 이격배치, 공공시설 및 공원을 배치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겠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등 ○ 기상, 수질, 동·식물상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3개월 이상의 부지기상 측정자료 또는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 인근 산업단지 기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하여야 함. - 기상, 수질, 동·식물상은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여야 함.	- 기상자료는 3개월 이상 계획지역 주변 기상청 AWS 자료(사남면사무소) 등을 검토하여 상관성 분석 후 대기질 모델링에 사용하겠음. - 동·식물상은 생태활동이 활발한 시기인 5~6월에 반경 1km까지 육수생물상을 포함하고, 수질은 오·폐수가 방류되는 지점(해양수질)을 포함하여 조사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낙동강유역 환경청	위원 주 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시 문헌(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계획 지역 및 인접지역에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는 최근 환경부고시 내용을 확인, 수록하여야 함. - 공사시 오수·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하류 수계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 내 수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시 계획지역 및 인접지역에 서식이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음. - 생태자연도는 최근 환경부고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겠음. - 공사시 오수·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하류 수계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사천강 포함 인근 해양수질도 조사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건강영향항목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지역내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 교육, 종교시설 등) 및 토지이용 실태(개발예정지 포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야 함. - 대기질 현황조사(PM-2.5를 포함한 대기환경기준 8개 항목)는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계획지역 및 인근 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악취물질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15.12)」에 따른 온실가스항목에 대해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지역 내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 교육, 종교시설 등) 및 토지이용 실태(개발예정지 포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음. - 대기질 현황조사(PM-2.5를 포함한 대기환경기준 8개 항목)는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하겠음. - 계획지역 및 인근 개발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악취물질을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15.12)」에 따른 온실가스 항목을 추가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지질 - 예정지의 경사도와 식생보전등급도면을 중첩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지구 경사도와 식생보전등급도면을 중첩하여 제시하고, 해당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낙 동 강 유 역 환경 청	위 원 주 기 회	- 절토사면 또는 경계지역의 구조물 규모, 지형변화지수를 제시하여야 함.	- 절토사면 또는 경계지역의 구조물 규모, 지형변화지수를 제시하겠음.	
		○환경민원 사항 - 인근 산업용지, 공장용지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민원 사례를 조사하여 동 공장 조성·운영계획의 환경영향저감방안에 적용하여야 함.	- 인근 산업용지, 공장용지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민원 사례를 조사하여 본 공장 조성·운영계획의 환경영향저감방안에 적용토록 하겠음.	
		○경 관 - 산업단지 조성시 주변 정온시설 및 도로에서의 경관영향을 경관시뮬레이션(근경, 중경, 원경) 등을 통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산업단지 조성시 주변 정온시설 및 도로에서의 조망점(근경, 중경, 원경)을 설정하여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하겠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쉬운 초안 요약서’(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참고)를 작성·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쉬운 초안 요약서’(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참고)를 작성·비치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5. 기 타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산업단지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하류 유하거리 20km 이내 취·정수장, 유하거리 5km 이내 농업용저수지 조사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수도법」에 의한 취정수장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용저수지 조사하여 산업단지 입지제한 여부를 검토하겠음.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15호)」에 따라 작성하겠음. 	
사천시 (산단관리과)	위원장 김경호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항공 MRO전문업체 선정됨에 따라 기 입지하고 있는 KAI 본사 및 2공장 인근 용당리 일원에 시급한 공업용지 부지난을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시 사천시는 국내 항공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평가대상범위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주거지(용당마을, 유천마을 등) 뿐 아니라, 공장가동시 발생 오·폐수로 인해 인근 수계(사천강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까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범위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주거지(용당마을, 유천마을 등) 뿐 아니라, 공장가동시 발생 오·폐수로 인해 인근 수계(사천강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까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시 단계적 및 체계적인 토지이용구상(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조화롭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및 체계적 토지이용구상(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주변지역 토지이용과 조화롭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p>3. 대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견 없음. 		
		<p>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이 밀집한 공업지역으로서 기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고려하여 누적평가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병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시 주변 기 운영중인 산업시설 뿐 아니라,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누적평가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절차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절차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음.	
사천시 (문화관광과)	위원 이 중 기	□ 총괄의견 ○본 사업은 본 사업은 사천시 관내 용당 일대에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조성계획의 목적에 걸맞게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적절히 구상되어 있음.		
		3. 대 안 ○이견 없음.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및 범위와 방법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보고서에 있는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주민공람 및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음.	
6. 기 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이거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임.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내이거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정하는 대로 관련 기관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사천시 (환경위생과)	위원 신현범	<p>□ 총괄의견</p> <p>○ 환경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하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p>	<p>○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하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겠음.</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 사업지구로부터 주변 반경 1km에는 KAI 1, 2공장,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대한 누적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p>	<p>○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에 대한 영향 예측시 반경 1km 이내 오염유발원을 조사하여 누적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p>	
		<p>2. 대안의 설정</p> <p>○ 대안설정은 2개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p>		
		<p>3. 평가항목 및 범위</p> <p>○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p>- 동·식물상 조사시에는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지점과 횟수를 선정하여야 함.</p> <p>○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p> <p>- 사업시행시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경관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검토하여 예측, 저감방안을 수립</p> <p>○ 수환경 보전</p> <p>- 공사 및 운영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수질 및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p>	<p>- 동·식물상 조사시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생태활동이 활발한 5~6월에 조사를 실시함.</p> <p>- 사업시행시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경관변화를 비교, 검토하여 예측, 그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음.</p> <p>- 공사 및 운영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수질 및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하겠음.</p>	
<p>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p>	<p>○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환경적인 영향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하겠음.</p>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사천시 (녹지공원과)	위원 조명철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지역특성 및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경제적 단지조성을 하고, 단지 내·외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	○지역특성 및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경제적 단지조성을 하고, 단지 내·외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함.	
		3. 대안의 설정 ○선정방법, 계획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제약요인, 수용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 설정	○입주업체가 정해진 사업으로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의 수렴계획이 수립됨	○법이 정하는 절차(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하겠음.	
		6. 기 타 ○지역 주민간의 관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를 원함	○지역 주민간의 관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음.	
사천시 (농축산과)	위원 박성민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천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용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사천시 (농축산과)	위원장 박성민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각 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평가한다면 타당성 있는 대상지로 사료됨.	○ 각 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상지역을 설정하여 예측, 평가하겠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KAI 제1, 2공장 사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산업단지로 토지이용구상안상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영농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보전가치 낮음.	○ 사업예정지 내 농경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영농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보전가치 낮은 것으로 분석됨.	
		3. 대안의 설정 ○ 대안1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근에 자연마을이 2개소가 존재함에 따라 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음방지 및 경관 확보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단지내 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소음방지 및 양호한 경관 확보하겠음.	
		4. 평가항목 및 범위 ○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시 인근 용당 및 유천마을이 있어 소음 및 진동기준 강화하여 항목 선정 필요	○ 사업시행시 인근 마을(용당 및 유천마을)에 미치는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고, 피해발생시 소음·진동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평가서 초안 등을 공고, 공람,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실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주민공람(평가서 초안) 및 주민설명회(주민요청시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	
용당마을 대표	위원장 김상문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본 계획시행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본 계획시행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용당 1리마을 대표	위원 김상문	<input type="checkbox"/>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예정지 인근 유천마을을 포함하여 대기 및 소음, 악취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대기 및 소음, 악취 등 영향예상 지역은 계획지구 인근 유천마을을 포함 반경 2km(소음 1km) 까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예정지는 대부분 농경지이나,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절·성토사면 등)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절·성토사면 등)가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3. 대안의 설정 ○본 산업단지는 입주업체(KAI)가 정해진 사업으로 공장가동시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 방안(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	○운영시 발생 오수는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Q=18,000m ³ /일)에서, 발생폐수는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Q=5,700m ³ /일)으로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함.	
		4. 평가항목 및 범위 ○사업예정지 주변은 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시설들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예정지 주변 기존 시설들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 뿐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에 의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토록 하겠음.	
사천시 협의회	위원 서원호	<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본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가 기존에 입지한 KAI 본사(1공장) 및 2공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용당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사업시행시 대상지 주변은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표 5.3-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및 조치계획(계 속)

구분	성명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사 천 시 협 의 회 회 장	위 원 서 원 호	<p>대상지 주변은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 <p>○공사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비산먼지, 건설소음 등의 영향이 미칠수 있는 범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바람.</p>	<p>○공사시 비산먼지(반경 2km) 및 건설소음(반경 1km)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까지 평가대상 지역으로 설정함.</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본 사업은 KAI (우주항공산업)이 입주할 계획인 바, 산업단지내 녹지공간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p>	<p>○본 산업단지내 녹지공간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음.</p>	
		<p>3. 대안의 설정</p> <p>○이견 없음.</p>		
		<p>4. 평가항목 및 범위</p> <p>○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저감대책 및 산업단지 가동시 발생 오·폐수의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대상지와 인근 기존 산업단지(KAI 1·2공장) 등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함.</p>	<p>○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저감대책 및 산업단지 가동시 발생 오·폐수의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대상지와 인근 기존 산업단지(KAI 1·2공장) 등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음.</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p>○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유천리, 용당리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함.</p>	<p>○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p>	
		<p>6. 기 타</p> <p>○없 음.</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용당(MRO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의견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대기질(PM2.5 등) 조사항목을 반영하여야 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연안기수역에 해당되므로 해역영향을 범위에 포함시켜야함</p> <p>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정</p> <p>3. 대안 ○ -</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기질 확산모델을 명시하지 않바랍니다. 국지기상을 이용한 대기질 영향예측을 적용요함 ○ 초기우수 처리대책과 비점오염저류를 위한 항목과 공업지역 원단위 적용에 따른 유출량 부하량산정과 이에 대한 배출계획이 반영되어야 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필요</p> <p>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p> <p style="text-align: right;">2018. 4. 11. 심의위원 이춘식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용당(MRO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p> <p>□ 총괄의견 ○ 친환경적 산단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p> <p>2. 토지이용 구상안 ○ 공원면적에 저류지중복 계획 ○ 계획된 녹지 9%가 단지 경계부의 완충녹지이고, 단지내 녹지공간이 없으므로 단지내 녹지공간을 확보할안 강구 ○ 기존 임야 등 녹지공간 유지방안 강구</p> <p>3. 대안 ○ 대안으로 단지내 토지이용 계획(단지내 녹지공간확보 등)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용수질감 및 생활음향안강구 ○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강구 ○ 환경질 조사시 부근내의 소음진동측정 및 평가</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전 및 공사시 주민의견수렴반영</p> <p>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p> <p style="text-align: right;">2018. 4. 13. 심의위원 이병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통보서 용 당 (항 공 M R O)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p> <p>□ 총괄의견 ○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견 없음</p> <p>2. 토지이용 구상안 ○ 지역특성 및 지형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경제적 단지조성을 하고 단지 내외의 자연 및 인문환경을 고려하여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p> <p>3. 대안 ○ 선정방법, 계획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계약요인, 수용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 설정</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정함</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법령에 따른 주민 의견의 수렴계획이 수립됨</p> <p>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지역 주민간의 관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를 원함</p> <p style="text-align: right;">2018. 4. . 심의위원 조 명 철 (인)</p>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통보서 용 당 (항 공 M R O)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p> <p>□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사전시 판내 용당 일대에 항공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조성계획의 목적에 걸맞게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p>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지역은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p> <p>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히 구상되어 있음</p> <p>3. 대안 ○ 대안(1,2)이 적절히 비교 설정되어 있음</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 및 범위와 방법이 적절히 설정되어 있음</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보고서에 있는 주민의견 수렴 계획을 시행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p> <p>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내 이거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2018. 4. . 심의위원 이종기 (인)</p> <p>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p>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심의 의견서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총괄의견

- 환경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환경과의 조화성에 대하여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대한 적절한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심의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지구로부터 주변반경 1km에는 KAI 1, 2공장,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대기질, 소음, 진동, 악취등에 대한 누적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조치
2. 대안의 설정
대안설정은 2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평가 항목 및 범위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동·식물상 조사시에는 계절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지점과 횡수를 선정하여야 함
 - 주변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시 주요조망지점에서의 경관 훼손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검토하여 예측 저감방안을 수립
 - 수환경보전
 - 공사 및 운영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을로인한 하천수질 및 해양수질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마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영향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5. 기 타

2018. 4. 23.
위원 신현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용당 (항공 M R O) 일반 산업 단지 조성 사업

□ 총괄의견

-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천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면 용지난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각 항목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평가한다면 타당성 있는 대상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KAI 제1,2공장 사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계획된 산업단지로 토지이용 구상안상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서 영농생산성 이 낮은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낮음
3. 대안
 - 대안1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근에 자연마을이 2개소가 존재함에 따라 공원 및 녹지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소음방지 및 경관 확보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일반산업단지를 조성시 인근 용당 및 유천마을이 있어 소음 및 진동 기준 강화하여 항목 선정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평가서 초안 등을 공고, 공람,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실시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타당함

2018. 4 . . .
심의위원 박성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용당(MRO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계획시행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예정지 인근 유천마을을 포함하여 대기 및 소음, 악취 등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예정지는 대부분 농경지이나,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변화(절·성토 등)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함.
3. 대안
 - 본 산업단지는 입주업체(KAI)가 정해진 사업으로 공장가동시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는 방안(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예정지 주변은 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으로 기존 시설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뿐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에 의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기 타
 - 없음.

2018. . . .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용당(MRO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가 기존에 입지한 KAI 본사(1공장) 및 2공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용당리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대상지 주변은 공장 등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공사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비산먼지, 건설소음 등의 영향이 미칠수 있는 범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사업은 KAI (우주항공산업)이 입주할 계획인 바, 산업단지내 녹지공간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3. 대안
 - 이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공사시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의한 저감대책 및 산업단지 가동시 발생 오·폐수의 적정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본 사업대상지와 인근 기존 산업단지(KAI 1·2공장) 등으로 둘러싸인 주거지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감대책(이주대책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유천리, 용당리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없음.

2018. . . .
심의위원 서원호 